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1. 19 선고 2020가단122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나30697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. 1. 19 선고 2020가단12252 판결

### 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원

담당변호사 한상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탁

변론종결 2021. 12. 22.

판결선고 2022. 1. 19.

### 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(채굴권)에 관하여 2020. 4. 16.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20. 4. 17. 접수 D 및 E로 마친 각 광업권이전등록청구권의 가등록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9. 14. 주식회사 F(이하 'F'라고 한다)에 1억원을 대여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광업권(이하 '이 사건 광업권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억원, 채무자 주식회사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'이라고 한다)을 마쳤다.

나. 원고는 F에게 추가로 2019. 3. 21. 2,000만원, 2019. 4. 1. 5,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고, F는 2019. 6. 22.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이자를 합하여 2억 1,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
다. 이후 F는 2019. 10. 16.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고 한다)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매도하고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, C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.

라. 원고는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20. 2. 3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에 기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, 이에 C은 2020. 2. 20.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합하여 2억 4,000만원을 변제하되, 2020. 2. 20. 1억원을, 2020. 4. 20.까지 나머지 1억 4,000만원을 변제하고, 원고는 2020. 2. 20. 1억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해지하고 위 임의경매신청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(이하 '이 사건 각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하였다.

마. 원고는 2020. 2. 20.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았고, 2020. 2. 25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해지하고, 2020. 2. 26.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.

바. 한편 피고는 C에 2020. 1. 14. 1억원, 2020. 2. 10. 2억 5,000만원, 2020. 2. 20. 1억 5,000만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고, 2020. 4. 16. C과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한 뒤 2020. 4. 17.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의 가등록(이하 '이 사건 광업권이전가등록'이라고 한다)을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당사자들의 주장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자이다. 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해지하자 곧바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광업권이전의 가등기등록을 마쳐주었는바, C과 피고 사이의 2020. 4. 16.자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광업권이전가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피고의 주장

- 1) 이 사건 광업권은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,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.
- 2) C은 피고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고 그 담보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이전가등록을 마쳐주었는바, 이는 C의 경영개선을 위한 신규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3)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.

## 3. 판단

가.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,

3, 4,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영월군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은 이 사건 광업권 외에도 굴삭기, 페이로우더, 크랏샤, 덤프, 수전설비, 계량기, 사무실 및 집기, 공구 및 부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, ② 원고는 제1호증의 자산내역서에 기재된 자산가치가 부풀려졌거나 일부는 C 소유가 아니어서 C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,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에게 체불임금, 임차장비대금, 운송대금, 미납 전기요금 등 4억 9,51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,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20. 1. 14.부터 2020. 2. 20.까지 C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는바, 위 현금자산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, 위 금액만으로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점, ⑤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판매가치가 있는 광물인 규석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, 이 역시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, ⑥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가압류 등록을 한 C에 대한 채권자로 G, H, I, 주식회사 J 등이 있기는 하나, G, H, 주식회사 J의 가압류등록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모두 해제, 집행취소결정 등을 이유로 모두 말소되었고, I의 C에 대한 채권액은 5,000만원에 불과하며,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원고의 채권액을 모두 합하여도 5억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광업권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, C이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. 가사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, 즉 ① 피고가 C 또는 그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들과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,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한 이후 이 사건 광업권이전가등록을 마쳤는바, C에 5억원을 지급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C이 그 5억원으로 원고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해지하고 말소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, 원고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스스로

말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 
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러한 점에서도  
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**4. 결론**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명중

## 별지 목록

## 1. 광업권(채굴권)의 표시

등록번호 : 접수 : 2009년 2월 2일 소재지 : 강원 영월군 , 강원 영월군 광업지적 : , 소단위 1, 2, 4

광종명 : 규석

면적 : 205ha

채굴권의 존속기간 : 2009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20년

## 2. 광업권(채굴권)의 표시

등록번호 : 접수 : 2009년 10월 23일 소재지 : 강원 영월군 , 강원 영월군 광업지적 : , 소단위 2, 4

광종명 : 규석

면적 : 137ha

채굴권의 존속기간 : 2009년 10월 24일부터 2029년 10월 23일까지 20년

